

변리사법 시행규칙

<목 차>

1. 변리사 실무수습

특허청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변리사 실무수습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특허청	작성 자	이름	여덕호
	담당부서 (과)	산업재산인력과		직급	4
	국장	김태만		연락처	042-481-5187
	과장	이춘무		이메일	dhyeo@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예비 변리사(연간 1,700여명) 이해관계자 : 출원인, 변리사, 변호사 등 관련 부처 : 법무부, 교육부				
5.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변리사실무수습은 출원인의 신뢰 확보 및 변리사 자격제도에 필수적인 제도로 존속이 필요하며, 변리사법에 근거 조항이 존재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6.1.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실무수습 이수 (변리사시험합격자 및 변호사자격자)</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background-color: #f0f0f0;">실무수습 이수완료시, 변리사 자격부여(특허청)</div> </div> </div>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16.1.27.)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기간 및 내용 등을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p> <p>② 변리사회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실무수습의 시작 일시 및 신청 요령 등을 포함한 실무수습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p>	<p>제7조(실무수습의 내용 및 일부 인정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론교육의 내용은 별표1에 따른다.</p> <p>② 이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론교육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이론교육 내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별표2에 따라 그 과정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③ 현장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변리사 시험 합격 이전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전에 현장연수에 상응하는 실무를 한 경우 별표3에 따라 그 기간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신설></p>	<p>④ 실무수습의 내용, 일부 인정 기준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신설></p>	<p>제7조의2(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의 업무 수행 등) ①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이론교육 기관은 제1항에 따라</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u>이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론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세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u>③ 이론교육 기관은 이론교육을 종료한 후에 실적과 명단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④ 영 제12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의 현장연수 기관은 현장연수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u></p> <p><u>⑤ 특허청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이론교육 기관 또는 현장연수 기관에 실무수습의 정지, 불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⑥ 특허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실무수습의 정지, 불인정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u>제7조의3(실무수습의 확인서 등) ①</u></p> <p><u>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영 제12조제1항의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그 내용과 기간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② 여러 개의 현장연수 기관에서 현장연수를 한 자의 현장연수 기간은 월 단위로 인정하여 합산한다.</u></p> <p><u>③ 특허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한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에 대해 실무수습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u>④ 특허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u></p>

현 행	개 정 안
	<p><u>무수습 확인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대해 실무수습의 불인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u></p> <p><u>⑤ 특허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금지, 불인정 등의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p>

1. 규제 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변리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들도 일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

* 국회 본회의 통과('15.12.31), 공포('16.1.27), 시행('16.7.28)

- 개정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실무수습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해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의 개정이 필요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개정 변리사법(제3조)은 실무수습을 하위법령에 위임

- 변리사 실무수습이 기존에는 변리사의 등록 요건이었으나,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의 자격 요건으로 변경되고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
- 일반 출원인이 특허 등을 출원할 때 변리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구축하고, 변리사 실무수습 대상자의 출신·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무수습 제도 도입이 필요

□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제·개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

-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위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기간, 기관 등 세부사항을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하여 변리사 자격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정부) 합리적 실무수습 도입으로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 변리사법 개정·공포·시행에 맞추어 법에서 위임된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위법령을 마련

- 실무수습이 면제되었던 변호사 등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여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변리사 자격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 (변리사) 사전 경력을 고려한 실무수습으로 불필요한 수습 기간이 감소하고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 출신 및 경력별 맞춤형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경력을 인정* 하여 불필요한 수습기간이 감소
 - * 변리사 사무소, 로스쿨·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의 일부를 인정
 - 변호사 등도 변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변리사로 활동하므로 출원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
- (출원인) 변리사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변리 서비스의 다양화로 편익 증대
 -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리사가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일반 출원인의 신뢰성 확보 가능
 - 다양한 출신의 변리사로 인해 출원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변리사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가능
 - 변리사가 부족한 지역에 변호사 등이 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 출원인의 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지역별 개업 변리사 분포('15.12) : 서울 3,426명(82.6%), 경기 233명(5.6%), 대전 137명(3.3%), 기타 350명(8.5%)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

- 현행 변리사법 시행령은 1년의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
 - 개정 변리사법(제3조)은 기존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이외에 변호사·특허청 경력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자격 취득을 위해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규정
 - 현재와 동일한 실무수습 적용은 다양화된 수습 대상자의 사전 경력, 실무 능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가

< 비규제대안 : 실무수습의 민간 자율 운영 또는 면제 >

-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변호사·특허청경력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하며,
 - 변리사 시험, 변호사 등 예비 변리사의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 내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
- 변호사는 변리사법 개정 이전에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 개정 변리사법은 모든 예비 변리사에게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은 실무수습의 면제는 불가

< 규제대안 1 :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

- 변리사 자격획득을 위한 실무수습을 이론교육(400시간), 현장연수(10개월)로 구분하여 실무수습의 내용을 규정
 - 예비 변리사가 변리사 사무소,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사전 경력 및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규제대안 2 : >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변호사도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수습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 다만, 일반 출원인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등록 요건에서 자격요건으로 변경되었으며, 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의 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변리사회, 변리사사무소 등 민간 기관의 자율성·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변리사 실무수습을 운영할 예정

< 해외사례 분석 >

- 해외 주요 국가는 변리사 관련 법률, 시장 상황,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각 국가의 운영 방식은 다양하나 출원인이 양질의 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운영
- 일본의 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실무수습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

* 출원 서류 작성 등 변리사의 사무능력 담보를 위해 변호사, 특허청 경력자 등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리사법 개정('07)

- 실무수습은 144단위(1단위당 30분)로 총 72시간의 교육을 이수
- 특허청, 변리사 사무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한 사람, 변호사 등은 실무수습의 일부를 면제
- 변호사는 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8시간) 수강으로 실무수습을 완료

< 일본의 변리사 실무수습 내용 >

구 분	온라인	이론수습
변리사법 및 변리사의 직업윤리	16단위	-
특허 및 실용신안 이론/실무	27단위	30단위
의장 이론/실무	12단위	12단위
상표 이론/실무	18단위	12단위
조약, 기타 변리사에 대한 이론/실무	17단위	

-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계 국가는 변리사 시험 응시 및 자격 취득 요건으로 2~3년의 지식재산권 분야 연수 또는 실무경력을 요구
 -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실무 능력이 일정 이상 검증된 것으로 보아 시험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은 없음
 - 미국은 특허청을 대상으로 출원·심판 대리 업무를 하는 특허대리인(patent ag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도 특허대리인 시험에 합격해야만 특허출원 대리 업무 가능
 - 변리사, 특허변호사는 시험 합격 후 별도의 실무수습 과정이 없음
- ※ 미국 Patent Agent는 특허청에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객관식 시험만을 거쳐 선발하는 자격사로, 심결취소소송 대리권한이 없는 등 한국, 일본의 변리사와 지위 및 권한이 다름

< 타법사례 분석 >

○ 타 자격사는 실무수습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변호사 제외)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사무소 등의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

구 분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합격자수	1500명선 (사사제외)	630명	90명	120명	850명	250명
실무수습기간	6월	집합1월 실무 5월	집합1월 실무 5월	집합3주 실무 9주	1년(등록) 2년(외부감사) (인터넷교육 100시간)	집합1월 실무 5월
실무수습비용	-	20만원	45만원	50만원	52만원(회차당)	72만원

-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제3조)하고 있으나 세무사 관련 별도의 실무수습이 없음
- 자격사의 실무수습은 해당 자격사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공인노무사는 인력관리공단 산하 대학(2곳)에 추가로 위탁·운영
- 타 자격사는 공무원 외에 사전 교육 및 경력에 따른 실무수습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공무원 외에 관련 업계 또는 업무 종사 경력을 시험의 일부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자의 자격사 취득을 유도
 - * 공인회계사 : 대학, 은행, 기업 등에서 회계 업무 경력자는 1차 시험 면제
 - 공인노무사 : 노조 전임자, 노무관리 전담자 등은 1차 시험 일부 면제

< 위임근거 검토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 제3조('16.1.27.자 공포)에 실무수습 규정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산업위 위원들은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최소한의 실무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시행령에 위임토록 의결('15.11.19)

< 이해관계자 협의 >

- 변리사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주요 이해관계인 및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주요 이해관계인 의견>

변리사회 : 변호사는 1년2개월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를 포함하여 2년의 실무수습이 필요

변호사협회 :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2개월의 이론교육으로 충분하며,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변호사협회가 주관

로스쿨 :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변호사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과 변리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16.3.10)
 - (참석) 변리사회 3명, 변호사협회 3명
 - (변리사회)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회가 주관
 - (변호사협회) 변호사에 대한 실무수습은 변호사협회에서 수행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1차 토론회 ('16.3.17.)
 - (참석) 변리사, 변호사, 변리사 수험생, 로스쿨 재학생 등 100여 명
 - (변호사협회)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의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집합교육 형태로 2개월의 실무수습 제안

※ 토론회 발표 대상은 변리사회, 변호사협회였으나, 변리사회는 발표 거부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토론회 ('16.4.1.)
 - (참석) 변리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학생, 기업관계자 등 90여 명
 - (변리사회) 변호사는 총 24개월의 실무수습을 받고, 대한변리사회가 실무수습을 주관
 - (변호사협회) 특허 명세서 작성 등의 교육은 필요하나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실무수습은 2개월의 집체교육으로 충분
 - (로스쿨) 로스쿨 취지·교육목적·교육내용과 실무수습의 연계 모색이 필요하며, 중복되는 교육은 집체교육에서 제외
 - (기업) 실무수습을 기존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책연구소) 수요자인 기업·연구원 등의 의견 반영이 필요
- 변리사법 개정 전 특허청은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변리사 자격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총 16회 회의, '12.11~'13.4)
 - (구성) 학계(4명), 산업계(4명), 변리사(4명), 변호사(4명) 등 12명
 - (경과) 공청회('13.5.31), 관계부처·기관 의견문의('13.7), 입법예고('13.9~10) 등 총 37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의안을 마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대상이 기존의 변리사시험 합격자에서 변호사 등으로 확대
 - 기존의 실무수습 관련 규정으로는 다양화된 예비 변리사에게 출신 및 경력에 따른 합리적인 실무수습을 시행할 수 없음

< 결론 >

- 개정된 변리사 실무수습은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일반 출원인의 변리사에 대한 신뢰 확보, 변리 서비스의 다양화로 편익 증대 등 실무수습의 추진 방향에 적합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16.1.27 공포) 제3조에서 변리사의 실무수습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 근거가 명확함
- 변리사 실무수습에 대해 변리사, 변호사, 로스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실무수습 안을 마련
 -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 출신 및 경력별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변호사도 산업재산권 법률 이론, 실무, 자연과학개론 등을 교육 받도록 하여 모든 변리사가 필요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토록 규정
 - 실무수습 내용과 관련된 사전 경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중복을 방지
- 다양한 실무수습 담당 기관을 인정하여 민간의 노하우 및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인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
 - * 이론교육기관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리사회 및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
 - 현장연수기관 : 변리사사무소, 법률사무소, 산업재산권 관련 국가, 공공 기관 등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6	2016	10	0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62,007.5	62,007.5			62,007.5	62,007.5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147,950	147,950	-147,950	-147,950
정부		3,411.2	3,411.2	3,660.04	3,660.04	-248.84	-248.84
총 합계		65,418.7	65,418.7	151,610.0 4	151,610.0 4	-86,191.3 4	-86,191.3 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2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2-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현행과 같이 1년간 실무수습 이수>

① 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분석	

정성적 분석	
--------	--

<규제대안 1 : 변리사 실무수습을 이론교육 및 현장연수로 구분 실시>

① 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 62,007.5백만

(정량)제목	변리사 실무수습 이수 비용
금액	14,960,000,000

(정량)제목	교육참여 기회비용
금액	47,047,500,000

(정성)제목	
분석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분석	사전 경력을 고려한 실무수습으로 불필요한 수습기간이 감소하고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147,950백만

(정량)제목	지역 소재 기업의 변리사 접근성 강화
금액	147,950,000,000

(정성)제목	전문화된 변리서비스의 혜택
분석	특허분쟁의 사전 대비 및 다양한 변리서비스의 활성화

③ 정부 :

비용 : 3,411.2백만

(정량)제목	행정 인력
금액	1,681,200,000

(정량)제목	실무수습 운영비용
금액	1,730,000,000

(정성)제목	
분석	

편익 : 3,660.04백만

(정량)제목	외부민간교육기관 화를을 통한 예산 절감
금액	600,000,000

(정량)제목	특허 등 심판무효인용율 감소로 인한 심판대응 행정비용 절감
금액	3,060,045,000

(정성)제목	
분석	

정성적 분석	
--------	--

<규제대안 2 : >

정성적 분석	
--------	--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 다수의 행정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 실무수습을 확대 운영하고 실무수습 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행정적·재정적으로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과거 변리사 실무수습을 운영(~'11)해왔으므로 기술적 집행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그간 변호사는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

- 변호사라면 누구나 실무수습을 신청·이수하여 변리사 자격의 취득이 가능하고
- 사전 교육 및 경력에 따라 실무수습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어 변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 취지에 부합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변리사 실무수습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므로 선택 가능한 대안임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정부) 변리사 전문성 확보 및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 변리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의 전문성 확보 및 변리사 자격 제도의 안정적 운영도모
- 로스쿨이 지식재산분야 이론 및 실무 교육 확대가 예상되어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

(변리사) 실질적인 교육·경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수습기간 감소 및 변리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 실무수습을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내용으로 정하고 출신 및 경력별 맞춤형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경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수습기간 감소

(출원인) 변리사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

-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리사가 변리사로서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므로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일반 출원인의 신뢰성 확보 가능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사항 없음